

1994. 12. 20
건설위원회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제 안 설 명

건 설 도 시 국 장

○ 건설도시국장 조 성 복 입니다.

존경하는 위원장님 !

그리고 위원 여러분

”충청북도사무위임및 위탁에관한조례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이 1990. 1. 13일 법률 제4216호로 공포되고,

1993. 8. 5일 법률 제4574호로 개정 공포되어, 국가공업단지, 지방공업단지, 농공단지
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현재 지방공업단지를 개발하려면 건설부장관의 지정승인을 득하여 지사가 1단계로

지정고시하고, 사업시행자지정, 실시계획 승인, 사업시행, 사업준공등 5단계로 시행
하고 있습니다.

○ 문민정부 이후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의 일원화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

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간소화, 능률화를 기하고, 민간기업의 편의를 도모
하고자

○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

로 지정개발하는 30만㎡이하의 국가공단의 경우 실시계획승인등의 사무가 도지사에게
위임되어, 충청북도사무위임규칙을 개정, 시장.군수에게 재 위임 시행중에 있습니다.

○ 따라서, 같은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, 도지사 권한인 별첨 실시계획등 사무를 시장.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(안)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.

○ 존경하는 위원장님 !

그리고 위원 여러분

이상에서 말씀드린 "충청북도사무위임및 위탁에관한조례증 개정 조례(안)"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